

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안내

-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『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』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별·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『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』는 2021년 2월중 전남도청 누리집 「시험정보」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,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

시 험 명	필 기 시 험 일	비 고
8·9급 공개경쟁임용시험	2021. 6. 5.(토) 예정 * 원서접수 : 3월중	2020년 2월중 공고 예정
9급 경력경쟁임용시험	2021. 7.24.(토) 예정 * 원서접수 : 4월중	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(고졸, 농업연구, 농촌지도사 포함)	2021.10.16.(토) 예정 * 원서접수 : 7월중	
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	2021.11.20.(토) 예정 * 원서접수 : 8월중	

- ☞ 수의7급 분야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2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.
- ☞ 상기 시험일정(안)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2021년도 임용시험계획 공고문(2월중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【참고】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: 9급 - 4. 17.(토) / 7급 - 7. 10.(토)

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

2021년부터 적용

- 7급연구직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‘영어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(참고1)
 - 대체시험 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텡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
- 7급연구직·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‘한국사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(참고3)
 - 대체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
 - ※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5년으로 연장
(영어 : 3년 → 5년, 한국사 4년 → 5년)
 - 2021년 시험의 경우,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
대해 성적 인정
-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, **중복접수 불가**(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)
- 통신·정보처리,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
- 농촌지도사 농업직류의 시험방법이 일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(참고4)

2022년부터 적용

-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(참고5)
 - 행정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·과학·수학 제외
 -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,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
-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
- 연구사(경제) 응시자격 학력기준 강화 : 학사 → 석사 이상(학예, 기록, 수의 제외)

2023년부터 적용

-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
 - 고졸(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중 **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**

참고1
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□ 대상시험 및 점수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	IBT 71점 이상	-
토익(TOEIC)	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 (TEPS)	(2018. 5. 12.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	(2018. 5. 12.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	Level 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□ 인정범위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**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**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·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
 - ※ 해당시험 한국 시행사에 외국에서 응시한 성적표를 보내서 공문으로 확인
-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(참고2) 참조

□ 사전등록

-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 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**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** 해야 함
 - 토익, 텡스, 지텔프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 - 토플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 - ※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인 성적은 성적 사전등록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(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질의/응답에 확인글 등록 및 유선(061-286-3371) 요청)
 - ※ 사전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만 등록가능하며, **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**
 - ※ 플렉스(FLEX)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

참고2

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

- ❖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※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

- ① '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- ② '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 50% 이하인 사람

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(舊2·3급으로,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)

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<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2.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

- 7급 영어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(PBT)	TOEIC	TEPS		FLEX
			'18.5.12. 이전시험	'18.5.12. 이후시험	
7급 공채	352	350	375	204	375

3. 제출서류 등 안내

①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 원본*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- 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
- 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
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7호)에 따라 검사

- 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
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
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4.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① (신청·제출 : 응시자 → 전남도)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*하고,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(등기)로 제출

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* 예 : (체크)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

※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(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)

② (대상 확인 : 전남도 → 응시자)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, 대상에 **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(공고)** 예정

③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**해당 시험에 한함**

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5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
참고3
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□ 기준점수(등급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(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)

□ 인정범위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**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**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
□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

-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·시험일자 등 입력
 -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·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**사전등록 필요 없음**

참고4

농촌지도사(농업) 시험방법 개편

□ 시험방법 개편

- 직급/직렬/직류 : 지도사/농촌지도/농업
- 시험방법 : (당초) 공개경쟁임용시험 → **(변경) 경력경쟁임용시험**
- 변경내용
 - 시험과목 축소 : 7과목 → 3과목, 응시자격요건(자격증) 신설
 - 선택과목 확대 : 1과목 → 4과목(선택과목 4과목 중 1과목 택)

□ 세부 변경내용

- 시험과목 : 3과목(필수과목 2, 선택과목 1)

구분	직급	직렬 (직류)	시 험 과 목
필수과목	지도사	농촌 지도사 (농업)	필수(2) 재배학, 작물생리학
선택과목			선택(1) 토양학, 작물육종학, 작물보호학, 농촌지도론 중 1과목 택

※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선발과 시험의 안정성·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에게 토양학, 작물육종학, 작물보호학, 농촌지도론 4개 과목 중 1과목 선택 기회 부여

- 응시자격요건 : 해당분야 기술사 및 기사 소지자

직 급	직 렬	직 류	제 한 사 항
지도사	농촌 지도	농 업	기술사(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) 기사(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식품, 생물공학, 토양환경, 유기농업, 화훼장식)

참고5

지방직 9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 안내

구분		현행 선택과목	개 편(안) ※ 필수과목
직렬	직류		
행정	일반행정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포함)
	법무행정	· 행정법총론, 민법총칙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민법총칙
	재경	· 경제학개론, 회계원리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경제학개론, 회계원리
	국제통상	· 국제법개론, 경제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국제법개론, 경제학개론
	노동	· 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
	문화홍보	· 문화사, 커뮤니케이션이론, 사회 과학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문화사, 커뮤니케이션이론
	감사	· 행정법총론, 회계학, 사회 과학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회계학
	통계	· 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, 사회 과학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
	기업행정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포함)
	운수	· 경영학개론, 철도법개론, 사회 과학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경영학개론, 철도법개론
세무	지방세	·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
교육행정	교육행정	·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
사회복지	사회복지	·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
사서	사서	·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
속기	속기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